

01

문의 부설 전력기술연구원 02-2182-0791

전력신기술 지정고시(제46호)안내

●● 지정고시(제4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 신기술명

세라믹 커플링센서를 이용한 몰드변압기 온라인 부분방전 진단장비(제품)

- 지정번호 : 제46호

-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태광이엔시 / 한국전기 연구원
- 대표자 : 이성우 / 박동욱
- 법인등록번호 : 134111-0032312/194222-0000073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4-3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28-1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세라믹 커플링센서
- 몰드변압기 진단 알고리즘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 일로부터 3년

■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 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2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개선안내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 힘을 안내하오니 경력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 11. 10), 국무총리보고』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력기술 및 감리원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함

■ 주요내용

○ 기 경력신고 대상자

- 기 경력신고만 하고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2007. 6. 25일 전까지 수첩발급 신청을 해야 함.
- 기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발급 받고 등급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는 2007. 6. 25일 전까지 경력변경 신고를 하고 등급변경신청을 해야 함.
- 기술자격 및 학·경력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법적지위를 인정하며, **2007년 6월 25일**부터는 연환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함**.(부칙 제4조)
- 2007. 6. 25일 이후 경력신고를 하려는 대상자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 중 **특급은 전기분야 기술사만 인정하고**,
 - 전기분야 **기능장·기사·산업기사**는 **최고 고급까지 인정하며**,
 - 전기분야 **기능사는 중급까지만 인정함**.
 - 전기판련 **학·경력자**에 대하여는 **초급만 인정하고**,
 - **소수경력자**에 대하여는 협회에 시행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해서 인정함
- 경력신고를 하지 않은 자 중 계정 전 규정에 의하여 상위 등급 또는 신규발급이 가능한 자는 2007. 6. 25일 전까지 경력신고를 하고 수첩을 발급 받아야 함

■ 개정법령 및 시행일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공포 : 2005. 12. 23(시행일 : 공포후 6개월 후)
-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 06. 22(시행일 : 2006. 06. 24)
-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별표2 및 부칙 제4조
- 시행일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은 2006. 6.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므로 **2007. 6. 25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함.(부칙 제4조)
- 우편접수로 하는 경우 **2007년 6월 24일(일) 소인** 까지 유효함.

■ 전력기술인의 범위 개정내용 [전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급 특급 기술자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고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감리원의 자격 개정내용 [전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급 특급 감리원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고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 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전기기술지원 및 진단·점검 신청 안내

●●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산업자원부의 특별법인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전력기술인들께서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도와드리기 위하여 전력기술지원센터에서는 전문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전력시설물에 발생하는 각종 트러블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점검 및 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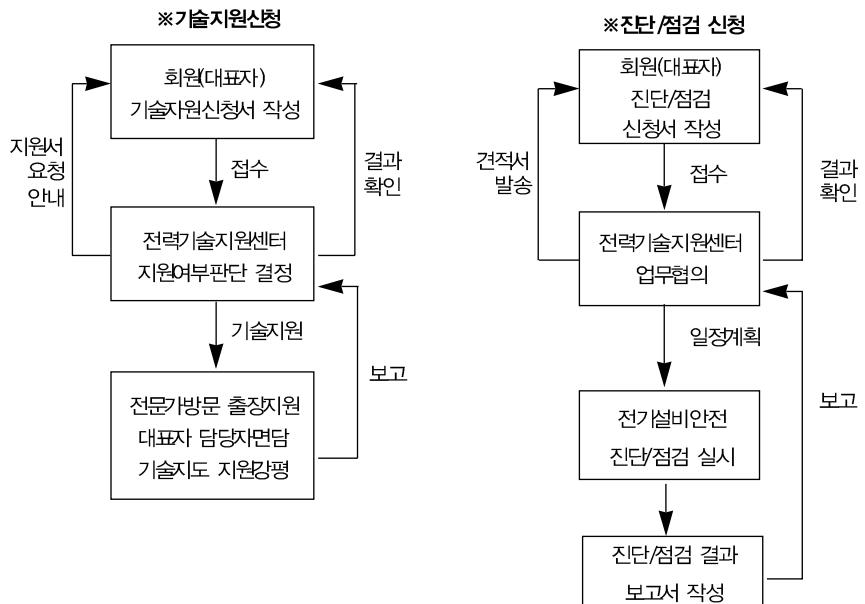
■ 전력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기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단,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합니다.)

■ 진단 및 점검

- 전력계통 진단,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점검, 고조파 장애진단, 정전기 방지 기술진단, 기타 부적합 전력설비 부분진단

■ 신청 절차



04

2007년도 전기안전관리 법정교육 이수안내

1. 법적 근거

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자원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①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별표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별표15]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I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부터 6월 이내

2.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일정

지역	과정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남서지회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1)	1/23 ~ 1/25	협회 종인회 교육장
서울남동지회		1/30 ~ 2/1	
서울동지회		1/16 ~ 1/18	
서울남서지회		2/13 ~ 2/15	
서울남동지회		2/21 ~ 2/23	
부산지회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2)	1/23 ~ 1/25	부산 상공회의소
경기지회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2)	2/6 ~ 2/8	군포문화예술회관
대전지회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1)	2/7 ~ 2/9	대전 상공회의소
광주·전남지회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2)	1/30 ~ 2/1	광주 여성빌저센타

※ 교육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정별 교과목 선정 및 배정시간**①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특별과정)**

교육과목	배정시간
개강식 및 수료식	1
소양교육	2
전력기술관련법령집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6

교육과목	배정시간
전기설비 안전관리실무	5
전기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3
교육평가	1
계	21

②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 과정)

* 교과목별 배정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과목	배정시간	교육과목	배정시간
개강식 및 수료식	1	수변전설비의 안전운용과 관리	5
소양교육	2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3
전력기술관련법령집	3	교육평가	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6	계	21

④ 교육실시 방법

- 교육시간은 총 21시간을 실시함
- 교육시작시간 : 09:00(08:50분까지 출석확인 후 입실)
- 교육종료시간 : 18:00(교육 마지막날은 13:00종료됨)

4. 교육접수 및 교육비

가. 교육접수

① 교육신청은 중앙회 및 전국지회에서 2007년 1월 2일 이후 선착순 접수합니다.(신청서 참조)

② 교육신청 방법 및 납부

- FAX 접수 : 교육신청서와 교육비 은행입금영수증을 해당지회로 FAX 전송
- 직접 접수 : 중앙회 및 해당지회 방문 접수
- 교육비 납부 : 교육을 받고자하는 지역의 해당지회(또는 중앙회) 은행계좌로 입금(은행계좌 번호 및 FAX번호 : 교육신청서 하단 참조)

* 교육비 영수증은 교육실시 당일에 드리며, 별도의 "계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지회에 교육접수 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십시오.

나. 교육비 : 76,000원

(3일 21시간 / 중식비가 포함되지 아니함)

5. 기타

- ① 본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반드시 선임기간에 따라 별표15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② 2006년도 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월과 2월의 교육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자원부에 보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임처리 됩니다.
- ③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전기사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해임처리

05

보증채무 약정갱신 안내

1. 보증채무약정갱신 안내

출자 발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보증업무를 이용중인 회원사중 보증채무약정 만료일이 3월에 다가오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바 확인하시어 보증채무약정을 갱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년의 경우로 보아 매년 3월에는 일시에 많은 회원사가 보증채무약정을 갱신 및 신규 체결하시게 되어 업무처리가 약간 지연될 수도 있으사오니 미리 약정갱신을 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 합니다.

2. 보증채무약정업무

약정기간내(3년기준)에 약정 한도금액 내에서 수시 보증업무거래를 하고자 할 때, 1~2개 출자업체의 연대보증 한도거래 용으로 표시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대보증인의 자격

구분	연대	보증인의 자격
이행보증	입찰 계약 차액 하자	1개업체이상출자좌수의 80% 이상인 업체
지급보증	선금급 대출	2개업체이상(출자좌수의 50% 이상인 업체)

※ 연대보증한도 : 다른 업체에 연대보증을 서 줄 수 있는 한도는 보증업무의 경우 금액과 좌수에 상관없이 횟수로 5회까지만 서줄 수 있습니다.

4. 약정서 작성방법

- ① 약정인 : 법인(개인업체는 사업장)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고 법인(개인업체는 개인)인감 날인
- ② 약정인의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 : 대표자 개인주소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개인인감 날인
- ③ 연대보증인

- 법인업체 : 약정서 연대보증인란 및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양도증서 상에 법인주소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 개인업체 : 약정서 연대보증인란 및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양도증서 상에 주민등록 상의 주소 기재 및 개인인감 날인

④ 제출서류

구분	법인업체	개인업체
약정인	1. 약정서(협회서식) 1부 2. 법인 및 사용인감 계출서(협회서식) 2부 3. 사용인감계출서(협회서식)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법인대표자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7.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8. 양도증서	1. 약정서(협회서식) 1부 2. 개인 및 사용인감계출서(협회서식) 2부 3. 사용인감계출서(협회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5. 개인인감증명서 1부 6.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7. 양도증서연대보증인상
연대보증인	5, 7, 8 항	4, 5, 6, 7 항

5. 이행 · 지급보증업무 안내

◎ 보증업무

- 출자회원사의 전기설계 · 감리용역 수행에 따른 의무이행 및 지급보증 등에 필요한 보증

◎ 보증의 한도

- 거래별 이용한도 액 산출 = 죄당이용지분액 × 출자좌수 × 해당배수

구분	종류	이용 배수	비 고
	입찰보증	5배 이내	죄당 이용지분액은 전년도 말 결산지분액을
이행보증	계약보증(차액보증포함)	15배 이내	
	하자이행보증	4배 이내	
지급보증	선금급지급보증	5배 이내	

* 경과조치 : 계약보증 이용배수는 2007. 1. 1 신규(약정갱신 업체 포함) 약정 체결업체부터 15배를 적용하고 기존업체는 종전 10배를 적용함.

◎ 보증수수료

보증종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이행보증	지급보증
수수료율	1000원(건당)	0.35%	0.60%	0.40%	0.50%

- 기본수수료 1,000원

06

2007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공표안내

■ 2007년 감리원 임금 공표안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2004.6.17)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기획8500-11904호)」 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 현행(3단계)

구분	2007년도 감리원임금	
	일임금액	환산비(Si)
수석감리사	254,954원	1.271
감리사	200,535원	1.000
감리사보	159,210원	0.794

• 종전(4단계)

구분	2007년도 감리원임금	
	일임금액	환산비(Si)
특급감리원	235,130원	1.374
고급감리원	171,130원	1.000
중급감리원	146,371원	0.855
초급감리원	130,066원	0.760

〈참고사항〉

- 환산비(Si)는 감리사 및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겸족감리원은 2006년 조사부터 조사대상자가 없어져 조사가 불가함. 그러나 업무상 잔존계약 등의 처리를 위하여, 2007년 적용단가는 2006년도 적용단가에 전체감리원의 평균 상승률(5.42%)을 적용한 122,959원으로 함
- 이 임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2007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공표안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단위 : 원)

구분	원자력 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사	335,459	313,502	263,887
특급기술자	322,377	274,065	204,020
고급기술자	251,333	213,533	173,417
중급기술자	202,063	169,173	146,066
초급기술자	152,866	125,467	104,129
고급기능사	221,758	136,169	114,757
중급기능사	154,630	108,359	100,340
초급기능사	117,024	89,635	77,785

■ 시행일 : 2007년 1월 1일